유연근무제 도입 반대! 낙태단속처벌 중단!
2010년, 여성의 권리를 쟁취하자!

102주년
세계 여성의 날

2010년 3.8 투쟁의 날, 여성운동의 과제

세계여성의 날 소개(콜론타이)

[토론]낙태와 여성의 재생산 권리

[소개]세계여성행진

사회진보연대

[목차]

2010년 여성운동의 과제: 102주년 3.8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 3
세계 여성의 날, 알렉산드라 콜론타이---------- 18
[토론]낙태 처벌, 단속이 아니라 여성의 재생산권리를 이야기할 때다-- 28
[소개]모두가 자유로워질 때까지 여성들은 행진한다:
2010 세계여성행진 3차 국제행동 ---------- 42

2010 여성운동의 과제

102주년 3.8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3.8 세계 여성의 날의 유래와 의의>

1908년 3월 8일, 미국의 방직공장에서 일하던 1만 5천여 명의 여성노동자들은 무장한 군대와 경찰에 맞서 외쳤다. 자본주의의 발달과 경제공황 속에서 미국의 여성노동자들은 빵 대신 먼지를 마시며 쉬지 않고 일을 하여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것을 요구받았지만, 그녀들은 정작 인간이자, 노동자, 시민으로서 그 어떤 권리도 누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여성도 인간이라고, 살인적인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으로는 살 수 없다고,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채 살 수는 없다고 외치며 용감하게 거리로 쏟아져나왔다. 여성들의 봉기는 오스트리아, 영국, 프랑스, 독일로 퍼졌다. 이와 같은 여성노동자들의 저항을 기억하고자, 나아가 전 세계 여성들의 연대를 강화하고자 1910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국제여성노동자회의에서는 '세계 여성노동자의 날'을 정한다.

이를 계기로 각 국에서 여성들의 지위향상과 남녀차별 철폐, 여성빈곤 타파 등을 요구하는 여성운동이 활기를 띠기 시작한다. 1915년 멕시코와 노르웨이에서 일어난 제1차 세계대전 반대 및 물가안정 운동, 오스트리아 · 에스파냐에서 일어난 군부독재 반대운동, 1943년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무솔리니 반대시위를 비롯해, 1979년 칠레의 군부정권 반대시위, 1981년 이란 여성들의 차도르 반대운동, 1988년의 필리핀 독재정권 타도 촛불시위 등이 그 대표적인 투쟁이다. 그 중에서도 1917년 2월 23일(3월 8일의 '줄리안'력 날짜) 여성의 날은

러시아 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첫날로 의미가 있다. 당시 전쟁으로 인한 물가폭등, 경제파업, 정치파업, 여성들의 단결 등 여러 요소의 결합으로 1917년 여성의 날 투쟁이 폭발적으로 일어난다. 그리고 '누가 전쟁을 원하는가? 전쟁의 수혜자는 결코 여성이 아니다! 전쟁으로 인한 물가 폭등은 여성의 삶을 더욱 곤란하게 하고 있지 않은가! 여성노동자들은 타국의 노동자와 싸울 것이 아니라, 국제주의의 깃발 아래 전쟁반대, 물가인상저지,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국가를 상대로 싸워야 한다!를 외치며 여성의 완전한 해방을 쟁취하기 위한 국제적인 투쟁의 날로 바뀌어야 함을 알려냈다.

이처럼 3.8 여성의 날은 여성해방을 앞당기는 투쟁의 날이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여성의 날은 '어머니 날'과 '발렌타인데이'를 뒤섞은 형태로 변질되고 있다. 여성들에게 장미꽃을 전하거나, 하루 동안 가사노동을 '대신' 해주는 날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역사를 기억하고 되살린다는 것의 의미는 가장 빈곤한 여성, 가장 불안정한 조건에서 일을 하던 여성, 가장 사회적으로 억압받던 여성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권리를 제기하는 날로 만드는 것이다. 경제위기와 저출산 · 고령화 현상의 결과를 여성에게 전가시키는 국가와 자본에 맞서, 2010년 3.8 투쟁을 힘차게 만들어가자!

여성 고용과 일자리, 출산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불안정한 여성 일자리와 저출산 문제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최근 그 심각성을 더하는 지표들이 잇따르고 있다. 올해 1월 여성실업자수와 실업률(실업자 21만 4000명 증가, 실업률 76.2% 증가)이 1999년 중반 이후 최악을 기록했으며, 2009년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서 한국은 합계출산율 1.22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이다. 저출산-고령화의 심각성으로 인해 사회적 위기감이 조성되며 여성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분석과 해결책이 정부와 자본의 신자유주의 정책의 관점 속에 다뤄지며, 오히려 여성에 대한 공격과 통제의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

2010년 정부는 '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고용부문의 주요 과제라고 밝혔다. 부담 없이 경제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기존의 일 · 가정 양립정책을 현실화하고, 안정적 양육을 위해 노동 시간을 줄이는 유연근무제(퍼

플잡)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출산 장려 정책을 펴는 한편, 불법낙태 단속을 강화하여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보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여성들의 요구를 수용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내용은 오히려 정부와 자본의 필요에 따라 여성인력을 활용하면서도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려는 것에 가깝다. 일과 가정을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강요 속에 더 불안정한 일자리로 내몰려야 하고, 임신했을 경우에도 상황과 조건은 관계없이 무조건 아이를 낳아야 할 판이다. 여성의 일자리와 재생산 문제는 전체 노동자민중들의 일자리와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지만, 이명박 정부의 불도저식 탄압에 위축되어온 노동자운동은 적극적으로 맞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 라며 내놓은 정책들이 '누구'의 '어떤 위기'를 '어떤 기회'로 바꾼다는 것인지, 그 대안이 여성과 노동자 민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대응은 어떠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과 실천이 필요하다.

1. 여성에게 가중되는 이중부담, 일 · 가정 양립 정책

여성이 일과 가정의 이중부담을 요구받아 온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경제위기와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해지면서 새로운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첫째, 일자리를 유연화시켜 불안정하더라도 여성고용을 늘리고, 시간을 조정해 일과 가정의 책임을 다시 여성에게 내맡기고, 둘째, 여성의 몸과 재생산과정에 대한 통제와 개입을 확대하면서 출산율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여성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출혈적인 노동과 부담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삶이 설계되어도 적절히 잘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런 국가와 자본의 요구가 일 · 가정 양립정책에 반영되어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정부의 일 · 가정 양립정책의 기조는 '출산과 보육지원'에서 '노동시간의 유연성 제공'으로 변화해 왔다. 이는 세계적 추세로 최근 유럽에서는 단시간 근로를 포함해 근로시간 운용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고용형태

를 포함한 근로시간재배치정책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도 유연근무제, 파트타임, 초과근로의 활용 등의 유연화된 노동 형태를 일 · 가정 균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자의로 타의로 직장에서 퇴출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대신 더 불안정한 일자리로 내몰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1980년대 이후 여성의 교육기회가 확대되고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면서 결혼 이후에도 계속 취업하고자 하는 여성이 늘어났다. 일하면서 가정을 돌볼 수 있는 지원과 제도 마련은 여성의 요구가 되었다. 한편 국가 차원에서도 여성을 직장으로 끌어내는 것은 중요한 문제였다. 서비스 유통 산업의 발달로 여성 인력 활용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정부와 자본의 이해관계 범위에서 여성의 요구는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등으로 실현된다. 여성노동자들의 현실 조건을 간과함으로써 고용상의 평등과 영유아보육은 법 문구에 머물렀지만, 이 때 부터 여성의 일과 양육의 관계 문제가 등장했다.

1990년 한국의 출산율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급기야 2005년 세계 최저출산율을 기록하며 일 · 가정 양립 논의는 새롭게 대두된다.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 경제적 문제로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가 추진되고 복지가 축소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여성의 이중부담을 '효과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일 · 가정 양립 논의가 이어진다. 현재에도 여전히 출산, 양육, 돌봄 등은 개별 가족 내에서 능력에 맞게 해결해야 할 일로 여겨지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엄마, 아내, 며느리, 할머니로 여성에게 일차적 책임이 있는 것은 변함없다. 즉 '여성이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와 노인, 가정을 돌보느냐'와 '여성이 직장에 다니면서 아이와 노인 가정을 돌보느냐'의 두 가지 선택지만이 제시되어 왔다. 이렇게 여성이 경력단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 원인에 대한 접근 없이 일 · 가정 양립은 여성이 처한 조건을 변화시킬 수 없다.

게다가 국가차원의 '우수인력'인 고학력 여성들이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일 · 가정 양립 정책의 대상이 상대적으로 고임금의 안정적 일자리를 가진 여성에게 한정되었다. 일례로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등의 제도적 기반은 어느 정도 갖춰진 편이다. 하지만 그 사용자가 증가추세임에도 다수의 여성 노동자는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거나 승진과 인사에서의 불이익, 사업주의 눈치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이 대부분임에도 정부가 계속 일 · 가정 양립정책을 강조하는 것은, 유휴 여성인력을 값싸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다.

결국 정부는 일 · 가정 양립정책을 일하는 여성들의 요구라 포장하지만 대다수 여성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뿐더러, 여성이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과 정부의 지원이 한계적인 상황에서의 가정을 모두 책임져야 하는 사회적 강요다. 그리고 이런 강요는 최근 유연근무제 도입 추진의 배경과 정확히 부합한다.

2. 유연근무제 도입이 낳을 문제점

지난 2월 18일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소수가 장시간 근로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유연근무제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작년 말부터 여성부가 추진하겠다던 퍼플잡의 시행 계획을 대대적으로 공표한 것이다.

사무실에 출근하여 장시간 경직된 형태로 노동하던 것을 다양한 형태로 유연화하여, 노동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 정부안의 주요 내용이다.

[표1] 5분야 9유형의 유연근무제

구 분	유 형	개 념
근무 장소 (Place)	①재택근무제 ★ At-home work	▸부여받은 업무를 사무실이 아닌 집에서 수행
	②원격근무제 Telework	▸주거지 인접지의 원격근무용 사무실(스마트 오피스)에 출근하여 근무
		▸모바일기기를 이용,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근무
근무 시간 (Time)	③탄력근무제 ★ (시차출퇴근제) Flex time	▸1일 8시간(주 40시간) 근무체제를 유지 ▸출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07:00~10:00) * '09.7~9 행안부에서 시행한 '조기 출·퇴근제'도 시차출근제의 한 형태
	④선택적 근무시간제 Alternative work schedule	▸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주 40시간 범위내에서 1일 근무시간을 자율 조정(자유롭게 출·퇴근시간을 조정)
	⑤집약근무제 Compressed work	▸총 근무시간(주 40시간)을 유지하면서 집약근무로 보다 짧은 기간 동안(5일 미만) 근무 * 예 : 1일 10시간 근무시 4일만 출근
	⑥재량근무제 Discretion work	▸실 근무시간을 따지지 않고 기관과 개인이 합의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간주 *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해 업무수행방법이나 시간배분을 담당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분야
근무 방법 (Way)	⑦집중근무제 Core-time work	▸핵심근무시간(예 : 10:00~12:00)을 설정, 이 시간에는 회의·출장·전화 등을 지양하고 최대한 업무에 집중하도록 함
근무 복장 (Dress)	⑧유연복장제 ★ Free-dress code	▸연중 자유롭고 편안한 복장을 착용토록 하여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진작(냉·난방 등 에너지 절약에도 기여)
근무 형태 (Form)	⑨시간제근무 ★ Part-time work	▸Full-time근무 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

★ : 기 도입된 유형으로 활성화 대상

자료 : 행정안전부(2010. 2.)

이명박 정부의 유연근무제의 도입, 여성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가?

이명박 정부의 유연근무제가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일 · 가정의 이중부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일자리의 '수'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자리의 '질'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현재 대다수 여성이 저임금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으며, 정부가 2009년 경력단절여성을 지원코자 전국에 100여 개를 설립했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창출된 일자리들만 봐도 비숙련-저임금 일자리였다. 또 유연근무제를 적용할 업무를 비숙련의 분담 가능한 주변업무로 꼽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 고용의 질적 향상은 전혀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남 · 여 간의 임금격차는 여전히 크고, 여성의 빈곤과 저임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파트타임, 단시간 근로를 늘린다는 것은 오히려 여성의 노동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뿐이다.

그렇다면 일 · 가정의 이중부담 해결의 문제는 어떠한가. 출산과 양육, 돌봄 노동이 여전히 여성의 몫으로 여겨지는 현실, 이로 인해 집안일을 병행해야 하는 여성의 일은 부수적 소득이 되며 여성의 노동 자체가 평가 절하 받고 고용 조건도 하향한다는 현실, 개별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보육 · 교육 · 돌봄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범주가 달라진다는 현실이 바로 여성들이 겪는 문제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의지는 없어 보인다. 출산과 양육, 가족 돌봄을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대신 사회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하고, 이를 수용하는 것은 개별 가정과 개별 여성의 능력에 맡기고 있다. 다만 어차피 여성이 가족 내에서 양육과 돌봄을 수행해야 하고, 일도 해야 하니 노동 시간을 줄이거나 유연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의 부담을 조율할 수 있게 '도와'줄 뿐이다. 결국 이명박 정부가 여성들에게 선심 쓰듯 내놓은 유연근무제는 여성의 역할과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지 못할뿐더러 여성의 일자리를 더욱 불안정하게 할 것이다.

유연근무제가 전체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유연근무제의 대상은 일차적으로 가사노동의 주전담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지만, 여성부에서 퍼플잡 도입을 밝혔을 당시부터 남성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대상에 포함한다는 계획이었다. 성별에 따른 실제 사용여부를 떠나 유연한 일자리를 전체 노동자에게 적용하겠다는 함의가 중요하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유연근무제의 핵심은 현실의 노동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데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보다는 기존의 정규직 일자리를 쪼개 자릿수를 늘리는데 있다. 또 노동시간과 장소는 유연화하되 시간활용도를 높여 집중적으로 생산량을 높이며, 노동 통제를 통해 노동 강도를 높이고자 한다. 정부가 이야기하는 생산성 제고와 고용 창출, 시간의 유연화의 의미는 한국의 단시간 근로 현황 속에 더욱 선명해진다.

세계적으로 단시간 근로가 늘어나는 추세고 한국 역시 단시간 근로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단시간 근로 확대를 주장하는 많은 연구자들이 단시간 근로를 열악한 일자리의 비정규직과 동일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2007년 기준 단시간 근로 형태를 보면 대다수의 단시간 근로는 단순노무, 숙박 및 음식업, 서비스업 등 비숙련-저임금 직종에서 비자발적으로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1] 그리고 단시간 근로의 70.2%가 여성으로 평균 53.1만 원의 임금을 받는다. 한편 최근 취업포털 인쿠르트가 직장인 107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다섯 명 중 한 명이 직장일 외 부업을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상대적으로 안정된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생활비 부족과 수입 감소로 부업을 할 수밖에 없는 투잡족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통계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임시직, 일용직의 경우 더욱 심각한 상황임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정부는 단시간 노동자와 유연한 일자리를 더 만들겠다는 것이다.

---

1) 반면 자발적 시간제 근로 비중은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종사자, 교육서비스 관련 종사자등에서 높게 나타난다. 이는 단시간근로가 직업의 지위에 따라 고용조건이 양극화되어 있고 자발, 비자발 선택도 교육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공무원 시범시행은 본격적인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신호탄

경력단절로 인한 여성인력(특히 고학력 여성)의 손실을 막고,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정부의 두 마리 토끼 잡기, 유연근무제는 올 하반기에 공무원부터 적용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여성 공무원들에게 유연근무제를 비롯한 일 · 가정 양립 정책이 시급한 것이 아니다. 공무원은 상대적으로 모성보호관련 법, 제도가 잘 구축되어 있는 편이다. 오히려 주변 분위기나 경력 유지의 문제로 제도가 갖춰져 있음에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이런 상황에 비추어보면 여성 공무원들에게 선심 쓰듯 내놓은 유연근무제의 목적은 다른 곳에 있어 보인다.

정부는 먼저 「유연근무제 활성화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여론수렴 및 시범실시 등을 거쳐 확정한 뒤, 하반기부터 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면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를 이용해 공공부문의 방만한 경영을 타파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공무원 노조 무력화가 손쉬워진다. 유연근무제 도입을 일 · 가정 양립에 적합한 고용형태 발굴과 일자리 늘리기란 말로 포장해 저항을 줄이면서 구조조정에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유연근무제도는 공무원들에게 일과 가정을 양립하게 해준다는 빌미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대폭 유연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는 공공부문에서 노동조건과 고용의 질을 악화시키고 전체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3. 낙태처벌과 출산강요.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는 어디에

저출산-고령화의 위기감에 대한 강조가 유연근무제처럼 여성과 전체 노동자에 대한 공격으로 다가오는 한편, 여성의 몸과 재생산 과정에 대한 통제와 개입으로도 드러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불법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를 발족할 예정으로 의료계, 시민단체, 자선단체등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낙태예방 사회협의체라는 이름으로 논의를 시작한 것은 다음과 같은 배경에서 기인한다. 첫째,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각해지며 여성의 출산에 국가가 직접적으로 관리, 통제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둘째, 작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낙태고발운동을 시작한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압력이 작용했다. 대다수 사람들이 의아해할 정도로 급작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낙태에 대한 관심과 고발, 처벌 조치가 한국사회에 여성의 권리와 사회적 윤리에 대한 새로운 담론을 형성해갈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대답은 부정적이다.

프로라이프(pro-life)의사회의 낙태고발 운동

작년 <진정으로 산부인과를 사랑하는 의사들의 모임>이 시작한 낙태근절 선언운동을 광범위하게 확대한다는 취지로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작년 12월에 발족했다. 이들의 주요 활동은 낙태 시술을 하는 병원에 대한 제보를 받고 고발하는 것, 정부에 대해 낙태 근절을 위한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것이다. 프로라이프 의사회는 지난 2월 3일 낙태 시술 병원 3곳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으며, 전국의 산부인과에 불법낙태시술 중단 촉구 · 경고 공문을 발송하고, 정부에게 5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2)]

---

2)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제안한 5대 우선 정책 과제(약칭 5-5 정책) , 2010. 02. 16 발표

1. 현재의 출산 장려금을 5배 이상 증액할 것
2. 두 자녀 이상의 가정에는 주택 분양이나 임대, 교육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학비 보조금을 월 50만 원 이상 지급할 것
3. 미혼모시설과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즉각적인 계획안을 밝히고 미혼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현재의 5배 이상 늘리며 미혼모 차별 금지법을 제정할 것
4.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모든 아이의 치료를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무료로 하고 장애인 보조금은 월 50만 원 이상으로 대폭 증액할 것
5. 초 중 고등학교에 피임 상담과 성교육을 전담하는 교사를 산부인과 전문의로 상근 혹은 비상근 배치하고 성교육 이수 시간을 연간 50시간 이상으로 대폭 늘릴 것

이러한 활동에 예상치 못한 파급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대다수 산부인과들은 고발을 우려하며 낙태시술을 중단하고 있고, 걸려오는 상담전화조차 피하고 있다. 각 포털 사이트의 질문 게시판에는 원하지 않게 임신을 했는데 요즘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산부인과에서 낙태수술을 받을 수 없다며 가능한 병원을 알려달라는 질문이 쏟아지고 있다.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가 금지되어 있는 한국의 현행법상 많은 여성들이 원하지 않거나,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아이를 낳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3] 하루에 1000건이 넘는 '낙태공화국'의 오명을 벗어야 한다는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낙태고발 운동은 하루에 1000여 명의 여성을 공포에 빠뜨리고 있다.

임신과 출산, 그리고 그 이후 양육까지 재생산을 둘러싼 일련의 경험과 과정은 여성의 삶을 구성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출산을 결정할 때에는 자신의 육체적 · 심리적 상태와 출산, 양육, 직장, 사회적 관계 등을 모두 고려한다. 한편 여성의 출산과 재생산노동은 사회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친다. 최근 저출산 문제나 일 · 가정 양립의 필요성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것이 일례다. 여성의 몸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이 개인과 가족, 사회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출산과 낙태, 재생산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없었다. 서구에서처럼 페미니즘 운동이 확장되거나 논쟁이 크게 일어난 적도 없어 낙태를 여성의 권리로 제기하는 운동이 만들어지지도 않았다. 그렇다 보니 여성의 삶을 구성하는 재생산에 관한 문제는 개별 여성의 선택과 책임으로 넘겨지고 있다. 이런 상황은 원하지 않

---

3) 모자보건법시행령 제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는 임신으로 낙태를 고민하는 여성에게 '사랑으로 낳으세요. 태아의 생명은 소중하니까요'라는 대답이 돌아와도 어쩔 수 없이 전전긍긍하며 음성적 낙태나 다른 방안을 찾게 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낙태 불법화와 단속 처벌의 강화가 아닌 여성의 재생산에 대한 권리를!

낙태를 불법화하고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경우, 일명 낙태선박과 같은 것을 필요로 하는 여성이 늘어나게 될 수도 있다. 네덜란드의 낙태옹호단체 <위민 온웨이브즈(Women on Waves)>는 낙태가 금지된 나라들을 찾아가 낙태선박에 여성을 태우고 공해에서 약물을 이용하여 낙태시술을 한다. 2001년부터 아일랜드, 포르투갈, 폴란드를 찾아가며 시작된 이들의 낙태선박은 아일랜드에 처음 갔을 당시 여성 200여명으로부터 '제발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한다. 이들의 대표 레베카 곰퍼러츠는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일지라도 인생에 한번쯤 '어쩔수 없는 때'가 있을지 모른다며, 그런 상황에 처한 여성의 결정권을 돕는 것이 자신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낙태선박의 이야기는 낙태를 철저히 금지하는 국가의 경우 낙태가 줄어들기보다는 음성적으로 낙태시술을 하는 여성이 늘어남을 보여준다. 하지만 많은 연구에서 우려하고 있듯 낙태시술이 음성화되면 음성화될수록 산모의 건강이 위험하고,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 실제로 국제가족계획연맹(IPPF)은 해마다 7만 명이 불법 낙태로 목숨을 잃는 것으로 추산한다.

출산과 낙태는 여성의 신체적 · 심리적인 경험에 각인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이다. 특히 낙태의 경우 여성에게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남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따라서 태아와 산모의 생명을 배치되는 것으로 놓고, 낙태를 선택한 여성에게 태아의 생명을 운운하며 비난할 수 없다. 낙태의 음성화는 단순히 낙태 처벌을 강화할 경우 발생할 안 좋은 예가 아니다. 낙태의 음성화로 인해 여성의 권리가 축소되고 제한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다. 낙태를 죄로 간주하는 것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육체에서 자유로운 남성에 비해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성적 행위를 제한하고, 반면 책임은 온전히 여성

개인의 몫이 된다. 또 임신과 출산, 양육 등 재생산 과정을 여성 스스로 통제할 수 없게 만드는 현실은 여성의 권리를 제기할 수 조차 없게 만든다. 즉 여성의 역할을 가족 내에 한정지은 사회적 인식과 구조에 맞서 싸울 수 없게 함으로써 여성들을 무기력하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의 권리와 태아의 생명을 대립시키면서 하나를 선택하라는 강요가 아니라 출산과 재생산, 자신의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여성의 권리 측면에서 낙태문제를 접근해야 한다. 이미 한국 사회에서 낙태가 불법화되어 있음에도 낙태천국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 즉 여성에게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하지 않을 권리와 피임할 권리가 주어져 있는지, 여성이 출산을 강요당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로써 주어져 있는지, 현재의 성규범과 결혼제도 속에서 미혼여성에게 출산이 가능한지, 기혼 여성일지라도 아이를 낳았을 경우 양육과 돌봄에 대해 사회적 지원은 어떠하고 자신의 삶을 구성해 갈 여건이 되는지에 대한 반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4. 2010년 여성의 요구 : 유연근무제 도입 반대와 재생산의 권리 쟁취

위기에 대한 접근과 해석, 대안이 정부와 자본의 관점이 아닌 여성의 관점에서 다시 쓰여야 한다. 신자유주의 하 저출산-고령화의 위기는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아 국가 전반이 위기에 처한 것이 아니다. 경제위기가 만성화되면서 국가가 더 이상 실업을 해결하고, 고용을 안정화하며, 재생산 구조를 담보할 수 없는 무능력함에 빠진 것이 위기의 실체다. 그리고 이런 위기를 신자유주의 노동의 유연화와 여성의 재생산 권리에 대한 통제를 통해 은폐하고 지연하고자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는 더 이상 지연될 수 없다. 이미 많은 여성들이 일을 하고 있음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며, 아이의 출산, 양육과 교육을 위해서 빚을 져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아이를 낳고 싶어도 쉽게 선택할 수

없다. 정부의 위기 지연을 위한 대안들이 여성에게 해답을 줄 수 없음은 자명하다. 여성의 가족 내 역할 강요, 불안정 노동과 빈곤으로 내몰림, 출산에 대한 강요, 출산을 선택할 수 없는 여건 등이 악순환 되는 상황에서 악순환의 목록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새 판을 짜야 한다.

첫째, 여성을 비롯한 전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유연근무제 도입을 막아야 한다. 이에 노동자들이 주체적으로 유연근무제를 거부하는 운동을 벌여야 한다. 필요한 것은 고용과 해고의 불안에 시달리지 않는 안정된 일자리다. 또 인간답게 살기위해 장시간 노동이 철폐되고 최저임금이 인상되어야 한다.

둘째, 여성에게 일과 가정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이중부담을 무한대로 감내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돌봄과 양육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시켜야 한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사회서비스를 시장화하고, 지불 능력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달리 제공되는 것에 반대해야 한다.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서는 돌봄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고용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낙태 단속과 처벌 강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구성하고자 하는 여성이 가져야할 인간의 권리는 국가나 자본, 사회적 간섭과 통제 속에 선택이 강요되는 것이 아니다. 여성이 출산과 모성을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야 하고, 출산이 자신의 행복과 대립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현실의 조건이 이를 뒷받침해주는 사회적 인식, 구조가 필요하다.

현재 국가와 자본의 공격 속도에 비해 대응은 미미하다. 각개 고립, 분산적으로 부딪치다 깨지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여성의 권리를 옹호하는 운동이 약한 상황에서 경제위기와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 될수록 여성에 대한 폭력과 공격이 거세질 것이다. 신자유주의 개혁 세력의 공세 속에, 보수집단의 공격 속에 전전긍긍하다 끔찍한 폭력에 직면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금 여성의 노동에 대한 권리, 재생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이것이 전체 노동자민중의 권리를 지켜내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 2010년 한 해, 여성 노동권 쟁취! 여성 재생산 권리 쟁취!를 위하여 여성의 현실에 대한 폭로와 토론, 교육을 멈춤 없이 이어가자.

세계 여성의 날[1)]

알렉산드라 콜론타이
번역: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

1920년 러시아의 1917 볼셰비키 혁명의 지도자 중 한 명이었던 알렉산드라 콜론타이는 러시아의 노동자계급 여성들을 위해 다음의 팜플렛을 작성했다. 콜론타이는 여성의 날의 역사를 간략하게 묘사하고, 이 날이 여성 평등에 있어서 가지는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전투적인 기념일

여성의 날 혹은 여성노동자의 날은 국제적인 연대의 날이며 프롤레타리아 여성의 힘과 조직을 확인하는 날이다. 그러나 이 날은 여성에게만 특별한 날은 아니다. 3월 8일은 노동자와 농민, 모든 러시아의 노동자들과 전 세계의 노동자들에게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기념일이다. 1917년 이 날 2월 대혁명이 일어났다.[2)] 이 혁명의 포문을 연 것은 뻬제르부르그의 여성노동자들이었다. 짜르와 그의 협력자들에 대해 반대의 깃발을 들 것을 처음으로 결심한 이들이 바로 이 여성노동자들이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여성의 날을 이중적

1) 이 글은 알렉산드라 콜론타이 저작선집(알릭스 홀트 역, Highland Park: Sun Press, 1975. 원판은 1920년 출간) pp. 1-8.에 실린 글로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가 번역하여 《사회운동》 35호(2003. 5)에 실은 글입니다.

2) 짜르 시대의 러시아는 여전히 중세시대의 "줄리안"력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 달력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사용하고 있던 "그레고리"력 보다 13일이 뒤쳐지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3월 8일은 구력(舊曆)으로는 2월 23일이다. 이 때문에 1917년 3월에 발생한 혁명이 "2월 혁명"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인 의미에서 축하해야 한다.
그런데, 모든 프롤레타리아의 축제일이라면, 우리는 왜 이 날을 "여성의 날"이라고 부르는가? 왜 우리는 여성노동자와 여성 농민들을 위한 기념행사와 회의를 개최하는 것인가? 이것이 노동자 계급의 단결과 연대를 위태롭게 하는 것은 아닌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여성의 날이 어떻게 생겨났으며 목표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어떻게, 그리고 왜 여성의 날이 조직되었는가?

불과 10년 전만 해도 여성 평등이라는 문제, 그리고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정부에 참여할 수 있는지 하는 문제는 뜨거운 논쟁거리였다. 모든 자본주의 국가의 노동자계급은 여성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했다. 부르주아들은 이러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의회 내에서 노동자 계급의 표가 늘어나는 것은 부르주아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나라에서 그들은 여성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방해했다.
미국의 사회주의자들은 투표권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1909년 2월 28일, 미국의 한 여성사회주의자가 여성노동자의 정치적 권리를 요구하는 미국 전역에 걸친 대규모 시위를 조직했다. 이것이 첫 "여성의 날"인 셈이다. 그러므로 여성의 날을 조직하는 일은 미국의 여성노동자들이 주도한 것이다.
1910년, 2차 국제 여성노동자 회의에서 클라라 제트킨[3]은 세계 여성노동자의 날을 조직하자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 회의를 통해 매년 모든 나라에서 한 날 "여성을 위한 투표는 사회주의를 향한 우리의 투쟁의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해 준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여성의 날"을 기념할 것을 결의했다.
이 시기 동안, 의회를 더욱 민주적으로 만드는 것, 참정권을 확대하고 여성의 표를 확장하는 것은 사활적인 이슈였다. 1차 세계대전 이전에도, 노동자들은 러시아를 제외한 모든 부르주아 국가에서 투표권을 가지고 있었다.[4] 오직 여

3) 클라라 체트킨은 독일의 사회주의 운동 지도자였고, 세계 여성노동자 운동의 주요한 지도자였다. 콜론타이는 성 페체르부르크의 방직 노동자를 대표하여 국제 회의에 참석하였다.
4) 이것은 정확하지 않다. 영국, 프랑스, 독일의 대다수 미숙련 노동자들은 투표권이 없었다. 미국에서도 소수의 노동자 계급 남성- 특히 이주자-만이 투표를 할 수 있었다. 미국의 남부에서는 흑인 남성은 종종 투표할 기회를 차단당했다. 모든 유럽지역에서 일어난 중간 계급의

성들만 비정상적으로 투표권이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동시에 자본주의의 냉혹한 현실은 여성들에게 국가 경제에 기여할 것을 요구하였다. 매년 직장에서 혹은 하녀나 파출부로 일하는 여성들의 수는 증가했다. 여성들은 남성과 함께 일했고, 국가의 부는 여성노동자들의 손으로 만들어졌다. 그럼에도 여성들은 투표권이 없었다.

그러나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 물가가 오르자, 가장 평온했던 주부들이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부르주아들의 약탈 경제에 저항하기 시작했다. "주부들의 봉기"는 점점 빈번해졌고, 오스트리아, 영국, 프랑스, 독일로 퍼졌다. 여성노동자들은 시장의 상품 진열대를 부수거나 사악한 상인들을 위협하는 것만으로는 생계비용을 내릴 수 없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정부의 정책을 변화시켜야 하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참정권을 확대해야 한다. 각 국에서 여성의 날을 조직하는 것은 여성노동자들의 투표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한 형태로 받아들여졌다. 이 날은 공동의 목표를 향한 투쟁에서의 국제적인 연대의 날, 사회주의 깃발 아래 조직된 여성노동자들의 힘을 확인하는 날이다.

첫 번째 세계 여성의 날

2차 국제 여성 사회주의자 대회의 결정 사항은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다. 첫 번째 세계 여성의 날은 1911년 3월 19일로 결정되었다. 이 날짜는 임의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 1848년 혁명 당시, 프러시아 황제가 무장한 인민들의 힘을 인식하고 프롤레타리아 봉기의 위협 앞에서 도망친 것이 3월 19일이다. 그가 약속한 많은 것들 중 지키지 못한 것이 바로 여성들을 위한 투표를 도입하는 것이다.

1월 11일 이후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여성의 날이 준비되었다. 그들은 이 날의 계획을 입에서 입으로 전했고, 언론을 통해 알려내기도 했다. 여성의 날이 열리기로 한 날에 한 주 앞서, 독일의 여성 투표권과 오스트리아에서의 여성의 날에 관한 두 개의 기사가 작성되었다. 여성의 날에 관한 다양한 기사 - "여성과 의회", "여성노동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주부와 정치의 관계" 등 -가 정부와 사회에서의 여성의 평등에 관한 문제들을 분석했다. 모든

참정권 운동이 노동자계급의 남성 혹은 여성의 투표권을 쟁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았다.

기사들은 여성 참정권을 확대하여 의회를 민주적으로 만드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첫 번째 세계 여성의 날 행사는 1911년에 열렸다. 성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여성의 날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는 수많은 여성들이 쏟아져 나와 바다를 이루었다. 작은 도시 곳곳에서 회의가 열렸고, 마을의 강당을 가득 채운 여성들은 노동자들에게 자리를 내어줄 것을 요구했다.
이는 여성노동자들의 투쟁력을 확인시켜 준 첫 계기가 되었다. 남성들은 변화를 위해 아이들과 함께 집에 머물렀고, 그들의 아내들, 포로였던 주부들은 회의에 참석했다. 30,000명이 참석한 대규모 거리 시위가 열리는 동안 경찰들은 시위대의 깃발을 빼앗으려 했고, 여성노동자들은 계속해서 버텼다.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고 의회 내에 있는 사회주의자 의원들이 유혈사태를 가까스로 막았다. 1913년, 세계 여성의 날은 3월 8일로 옮겨졌다. 이후 이 날이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의 날이 되었다.

여성의 날은 필수적인가?

미국과 유럽에서 여성의 날은 놀라운 결과를 낳았다. 어떤 부르주아 의회도 노동자들에게 양보하거나 여성들의 요구에 응답할 것을 생각하지 않았었다. 그 당시 부르주아들에게 사회주의 혁명이 위협이 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여성의 날은 무엇인가를 달성했다. 이 날은 정치적 기회를 별로 갖지 못한 우리 프롤레타리아 자매들에게 선동의 훌륭한 수단이 되었다. 그녀들은 여성의 날을 위한 회의와 시위, 포스터와 팜플렛, 신문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심지어 정치적으로 뒤쳐진 여성들도 스스로 “이 날은 우리의 날이다. 여성노동자들의 축제일이다”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서둘러 회의와 시위가 열리는 곳으로 향했다. 각 여성의 날 행사가 끝나고, 더 많은 여성들이 사회주의 당과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조직들은 발전했고 정치적 합의는 진척되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날은 노동자들의 국제연대를 강화하는데 기여했다. 독일의 동지들이 영국으로 가고, 영국의 동지들은 네덜란드로 가는 등 각 국에 있는 당들은 연사들을 교환했다. 노동자 계급의 국제적인 단결은 더욱 견고해졌고, 이는 전체 프롤레타리아의 투쟁력이 성장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여성노동자 투쟁의 날의 결과이다. 이 날은 프롤레타리아 여성들의 합의와 조직력이 확대되도록 했다. 그리고 이것은 노동자 계급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싸움을 성공으로 이끄는데 이 여성의 날이 필수적임을 의미한다.

러시아에서의 여성노동자의 날

러시아 여성노동자들은 1913년에 처음으로 "여성노동자의 날"에 동참했다. 이 시기는 짜리즘이 노동자와 농민들을 옭죄고 있던 시기라서, 공개적인 시위로 "여성노동자의 날"을 기념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러나 조직된 여성노동자들은 세계적인 여성의 날임을 천명할 수 있었다. 노동자계급의 합법적인 신문들(볼셰비키의 프라우다, 멘셰비키의 Looch)은 세계 여성의 날[5]에 관한 기사를 보도했다. 이 신문들은 특별 기사, 여성노동자 운동에 참가하는 이들의 초상화, 베벨이나 체트킨[6]과 같은 동지들의 인사에 지면을 할애했다.
이 냉혹한 시기에 회합은 금지되어 있었다. 그러나 페트로그라드, 칼라샤일코프스키에서는 볼셰비키에 속해있던 여성노동자들은 "여성 문제"에 관한 공개포럼을 조직했다. 입장료는 5 코펙이었다. 이는 불법적인 회합이었지만 회의장은 가득 찼다. 당원들이 연설을 했다. 그러나 이 열띤 회의가 끝나자마자 경찰들은 경고와 함께 회의를 침탈하고 많은 연사들을 체포해 갔다.
짜르의 억압 하에서 살고 있었던 러시아의 여성들이 국제 여성의 날 투쟁에 어렵사리 함께 했던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러시아가 깨어나고 있으며, 짜르의 감옥과 단두대가 노동자들의 투쟁 정신을 죽일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환영할 만한 신호다.
러시아에서 1914년 "여성노동자의 날"은 훨씬 잘 조직되었다. 두 개의 노동

5) 러시아 사회민주주의노동자당은 1903년 대회에서 "볼셰비키"와 "멘셰비키"로 분열되었다. 1903년에서 1912년 사이 양 파는 서로 협력했고, 잠시 동안 단결했으나 다시 분열했다. 모든 사회주의자들은 이 논쟁에서 양쪽 모두에 속하거나 중립을 지켰다. 활동적인 사회주의자이자 여성권을 쟁취하기 위한 싸움에 나섰던 콜론타이는 처음에는 분파에 속하지 않았으나, 몇 년 후 멘셰비키가 되었다. 그녀는 1915년에 볼셰비키가 되었고, 중앙 위원회에서 유일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소비에트 공화국의 복지 인민위원이었고 볼셰비키 당 여성국장을 역임했다.

6) 아우구스트 베벨(1840-1913)은 독일 사회민주당의 지도자였다. 그는 여성운동 지지자, 그리고 마르크스주의와 여성에 관한 고전의 작가로 잘 알려져 있다.

자 신문 모두 이 행사에 집중했다. 우리의 동지들은 “여성노동자의 날”을 준비하는 데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 경찰의 방해로 인하여 시위를 조직하지는 못했다. “여성노동자의 날”을 계획하는 데 가담했던 이들은 짜르의 감옥으로 넘겨졌고, 이후 많은 사람들이 차가운 북쪽 지역으로 보내졌다. “여성노동자들의 투표권을 쟁취하자”는 자연스럽게 러시아에서는 짜르의 독재 권력을 몰아내자는 공개적인 요구가 되었다.

제국주의 전쟁 시기의 여성노동자의 날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모든 나라의 노동자 계급은 전쟁의 피로 뒤덮였다.[7] 1915년과 1916년에는 해외에서 열리는 “여성노동자의 날”이 설득력이 없는 일이었다. 러시아 볼셰비키 당과 관점을 공유한 여성 사회주의자들은 3월 8일을 여성노동자들의 전쟁 반대 투쟁의 날로 바꾸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독일과 다른 나라에서 사회주의자 당의 반역자들은 여성 사회주의자들이 회합을 조직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여성 사회주의자들은 국제회의 개최장소인 중립국으로 가는 여권 발급을 거부당했다. 그곳에서 여성노동자들은 국제 연대의 정신이 부르주아들의 바램에도 불구하고 살아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다.

1915년에는 오직 노르웨이에서만 가까스로 국제 여성의 날 시위를 조직할 수 있었고, 러시아와 중립국의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러시아에서 여성의 날을 조직하는 것은 난폭한 짜리즘 권력과 군대 기구 때문에 생각조차 하기 힘들었다.

위대한 1917년이 왔다. 기아와 추위 그리고 전쟁 시도는 러시아의 여성노동자와 여성 농민의 인내심을 파괴했다. 1917년 3월 8일(구력으로 2월 23일) 여성노동자의 날, 이들은 페트로그라드의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일부는 노동자, 일부는 군인의 아내였던 여성들은 “우리의 아이들에게 빵을 달라”, “우리

7) 1914년 전쟁이 발발했을 때, 국제 사회주의 운동은 대대적으로 분열되었다.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영국의 대다수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전쟁을 지지했다. 러시아의 콜론타이, 레닌, 트로츠키, 독일의 클라라 체트킨, 로자 룩셈부르크, 미국의 유진 뎁스 등 다른 사회주의자들은 전쟁에 찬성하는 사회주의자들을 노동자 계급과 노동자 혁명을 위한 투쟁의 배신자라고 비판했다.

의 남편을 전장에서 돌려보내라"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 중대한 시기에 조직된 여성노동자들의 시위는 짜르의 비밀 군대도 감히 평소와 같이 진압하지 못할 만큼 위협적인 것이었다. 그들은 민중들의 분노로 폭풍치는 바다를 혼란에 싸여 바라보기만 했다.
1917년의 여성노동자의 날은 역사적인 기념일이 되었다. 이날 러시아의 여성들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횃불을 치켜들었고 세계를 격분시켰다. 2월 혁명은 이 날로 시작되었다.

우리의 투쟁 호소

"여성노동자의 날"은 여성의 정치적 평등을 요구하는 투쟁과 사회주의를 향한 투쟁 속에서 10년 전 처음으로 조직되었다. 이러한 임무는 러시아의 노동자 계급 여성들에 의해 달성되었다. 소비에트 공화국에서 여성노동자와 여성농민은 투표권과 시민권을 쟁취하기 위해 싸울 필요가 없다. 그들은 이미 이러한 권리를 쟁취했다. 러시아의 여성노동자와 농민은 평등한 시민이다. 더 나은 삶을 좀 더 쉽게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무기-투표권, 소비에트와 그 밖의 조직에 참가할 권리-가 그들의 손에 있다.[8)]
그러나 권리만으로 충분하지는 않다. 우리는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투표권은 우리 스스로의 이익을, 그리고 노동자 공화국의 이익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는 무기이다. 소비에트 권력 2년 동안, 삶 자체는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다. 우리는 단지 공산주의를 향한 투쟁을 진척시켰을 뿐이며, 여전히 어둡고 억압적인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세계에 둘러싸여 있다. 가족, 가사노동, 성매매라는 족쇄는 여전히 여성노동자들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여성노동자와 여성농민은 러시아를 진정한 공산주의 사회로 만드는 데에 온 힘을 기울여야만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삶에서의 평등을 쟁취할 수 있다.
이를 앞당기기 위해, 우리는 우선적으로 러시아의 망가진 경제를 회복시켜야 한다. 우리는 '훌륭하게 조직된 노동자 군대 창설'과 '교통의 재건'이라는 가

8) "소비에트"라는 단어는 "평의회"라는 의미이다. 소비에트, 혹은 노동자 평의회는 공장과 지역의 회의를 통해 선출된 대표들로 구성되어 노동자들에 의해 통제되는 민주적인 기구이다. 소비에트의 대표는 그들의 유권자에게 보고할 의무를 가지고 있었으며, 즉시 소환될 수도 있었다.

장 긴요한 우리의 임무를 해결하는데 신경을 써야 한다. 만약 우리의 노동자가 제대로 움직인다면 우리는 조만간 다시 한번 엔진을 돌릴 수 있고 철도는 다시 작동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것은 남성·여성노동자들이 죽도록 원했던 식량과 연료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통이 복원되면 공산주의의 승리에 속도가 붙을 것이다. 그리고 공산주의의 승리는 완전하고도 근본적인 여성의 평등을 가져올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올해의 "여성노동자의 날"의 메시지가 "여성노동자, 여성 농민, 어머니, 그리고 자매들이여, 철도의 혼돈을 극복하고 교통을 재건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 우리의 동지들에게 도움을 주자! 식량과 연료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모두가 함께 하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지난해 여성노동자의 날의 슬로건은 "모두가 붉은 전선의 승리를 향해!"[9]였다. 이제 우리는 여성노동자들이 새로운 무혈 전선-노동자 전선으로 결집할 것을 요청한다. 적군은 조직되고, 훈련되고,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외부의 적을 물리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조직화, 자기 훈련, 자기 희생과 노력을 통해서만 내부의 적- 교통과 경제의 혼란, 기아, 추위, 질병-을 물리칠 수 있다. "모두가 무혈의 노동전선의 승리를 향해!"

여성노동자의 날이 가지는 새로운 임무

10월 혁명은 시민권에 관한 한 여성들에게 남성과의 평등을 부여했다. 불과 얼마 전에도 가장 불행하고 억압받았던 러시아 프롤레타리아 여성들은 이제 소비에트 공화국에서는 타국의 동지들에게 자랑스럽게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소비에트 권력을 통해 정치적 평등으로 향하는 길을 보여줄 수 있었다.

여성들이 아직도 초과노동을 하던 자본주의 국가들과는 상황이 매우 달랐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여성노동자의 목소리가 매우 약했다. 노르웨이, 오스트레일리아, 핀란드, 그리고 북미의 몇 주에서 여성들은 심지어 전쟁 전에 시민권을 획득했었다.[10]

9) 1917년 10월/11월 노동자 계급이 권력을 장악한 후, 러시아 노동자 국가는 두 가지 큰 문제에 직면했다. 하나는 미국을 포함한 13개국으로부터 침략당한 것이고, 두 번째는 러시아의 친-군주 세력과 친-자본 세력의 저항이었다. 레온 트로츠키의 지시 하에, 소비에트는 노동자, 농민의 군대인 '적군'을 창설했고, 이들은 반혁명 세력을 척결했다.

독일에서, 카이저가 몰락하고 "타협자"[11]들이 부르주아 공화국을 세운 이후, 36명의 여성들이 의회에 입성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는 한 명도 없었다!
1919년, 영국에서 한 여성이 선거를 통해 의원으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누구였을까? "레이디"였다. 바로 지주, 귀족이었던 것이다.[12]
프랑스에서도, 여성의 투표권 확대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부르주아 의회라는 틀 속에서 여성노동자들에게 이런 권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권력이 자본가와 유산자들의 손에 있는 동안, 어떠한 정치적 권리도 집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전통적인 노예의 위치에 있는 여성노동자들을 구출해주지 않는다. 프랑스 부르주아들은 프롤레타리아 사이에서 볼셰비키 이념이 확산되자 노동자계급에게 또 하나의 빵조각을 던져주고자 했다. 그들은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줄 준비를 했다.[13]

부르주아 신사 양반, 너무 늦었소!

10월 혁명의 경험 이후, 프랑스와 영국 등지의 모든 여성노동자들은 오직 노동자 계급의 독재, 소비에트의 권력만이 완전하고 절대적인 평등을 가져다 줄 수 있고, 궁극적인 공산주의의 승리만이 권리의 박탈과 억압의 낡은 사슬을 끊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게 되었다. 이전에 세계 여성의 날의 임무였던 여성의 투표권을 쟁취하기 위한 싸움을 부르주아 의회가 대신하고 있으니, 여성노동자들은 이제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는다. 제3 인터내셔널의 슬로건을 내건 싸움으로 여성노동자들을 조직해야 한다. 부르주아 의회의 활동에 참여하기보다는, 러시아로부터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

10) 1차 대전에 앞서 여성들은 미국 각처에서 투표권을 얻었다. 21세 이상의 모든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연방 수정 조항이 1920년 8월 26일에 통과되었다. 1960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노동 계급의 인민들이 투표하는 것을 가로막는 최후의 법적인 장벽이 무너졌다.

11) 콜론타이가 언급한 타협은 1918년 카이저가 몰락한 이후 독일에 새로운 자본주의 정부를 세운 사회민주주의 지도자들이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반혁명을 지지했다.

12) 귀족출신의 레이디 아스토어가 영국 최초의 여성 의원이었지만, 최초의 의원으로 선출된 여성은 아일랜드의 혁명적인 콘스턴스 마키빅츠였다. 다른 신 페인 당의 성원들과 함께 그녀는 제국 의회에서의 자신의 자리를 거부했다.

13) 프랑스의 여성들은 결국 2차 대전 이후까지 투표권을 쟁취하지 못했다.

"만국의 여성노동자여! 전 세계를 약탈하려는 자들에 맞선 투쟁에서 단결된 프롤레타리아 전선을 조직하자! 부르주아들의 의회주의를 무력화시키자! 우리는 소비에트 권력을 환영한다! 남성·여성노동자들에 대한 불평등을 타파하자! 우리는 세계 공산주의의 승리를 향해 노동자들과 함께 싸울 것이다!"
이 호소는 새로운 질서를 향한 시도가 한창일 때 처음으로 울려 퍼졌고, 내전의 전장에서도 들릴 것이며 다른 나라의 여성노동자들의 심금을 울릴 것이다. 여성노동자들은 이 호소에 귀 기울일 것이며 올바르다고 믿을 것이다. 최근까지 그들은 만약 겨우 몇 명의 대표를 의회에 보낼 수 있다면 그들의 삶이 좀 더 편해질 것이고 자본주의의 억압이 견딜 만 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다르게 생각한다.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소비에트 권력을 세우는 것만이 여성노동자들을 자본주의 하에서 그들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굴욕과 불평등, 고통의 세계에서 구할 수 있다. "여성노동자의 날"은 투표권 쟁취를 위한 투쟁의 날에서 여성의 완전한 해방을 쟁취하기 위한, 즉 소비에트의 승리와 공산주의를 향한 국제적인 투쟁의 날로 바뀌어야 한다.

자본의 권력을 타도하자!

부르주아 세계의 유산인 여성의 불평등, 무권리, 억압을 타파하자!

양성의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위한 투쟁에서 여성 · 남성 노동자의 국제적 단결을 향하여!

[토론]

낙태 단속·처벌이 아니라 여성의 재생산권리를 이야기할 때다

산부인과 불법 낙태 근절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프로라이프의사회는 2월 3일, 불법 낙태혐의가 포착된 병원 3곳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다음 날 서울중앙지검은 프로라이프의사회가 산부인과 3곳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2008년 12월에 출범한 진오비(진정으로 산부인과를 사랑하는 산부인과의사들 모임)는 2009년 10월 낙태근절운동을 개시하면서 12월 초 타과 의사와 일반인도 참여하는 낙태근절운동본부를 설립하고 12월 말에는 프로라이프의사회로 명칭을 바꾸었다. 이들은 태아 생명 보호를 모토로 걸고 "어떠한 경우에도 임신과 출산, 육아를 아무런 제약 없이 마음껏 할 수 있는 사회토양을 만들어 주어야 하며, 산부인과 의사들에게는 낙태시술을 하지 않고도 걱정없이 소신껏 병원운영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의료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낙태근절운동을 벌이고 있다.

프로라이프의사회는 올해 1월 1일부터 낙태 시술 병원을 제보받기 시작했으며 정부 또한 불법 낙태 시술 의료기관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프로라이프 의사회는 작년 11월 말 대통령 직속기관인 미래기획위원회의 '제1차 저출산대응전략회의'에 참석하여 낙태 문제 해결을 촉구했으며 이에 이명박 대통령은 낙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전재희 복지부 장관도 앞으로 낙태를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최근의 낙태 고발과 이에 대한 적극적 수사는 프로라이프의사회의 강력한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1. 여성의 몸과 출산을 여성이 말하지 못하는 현실

그런데 문제는 태아의 생명 존중이라는 슬로건에 여성의 존재는 삭제되어 있다는 것이다. 낙태근절 운동에서 여성은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설계하는 하나의 주체가 아니라 '아이 낳는 기계'이거나 원치 않는 임신 시 생명을 빼앗는 범죄자, 살인자로 등장하고 있다. 여성들이 현재 처한 현실에서 그녀들의 필요와 요구에 봉사해야 할 의사들이 무슨 권리로 여성들의 삶을 통째로 바꿔버릴 임신과 출산에 대해 통제하려 하는가. 여성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는 귀를 가로막은 채 의사들은 지식과 권위를 남용하며 여성들의 삶에 대한 스스로의 선택과 권리에 메스를 들이대려 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국가는 '저출산 대책'을 빙자하여 낙태반대 운동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필요한 것은 여성들이 자신의 상황과 요구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낙태=범죄', '낙태=살인'이라는 구도 하에서는 여성들이 왜 낙태를 하게 되는지, 여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여성들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 여성이 아무리 낙태를 둘러싼 자신의 얘기를 하더라도 '범죄, 살인의 경위'를 설명하는 것 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런 구도 자체가 여성들에게 매우 폭력적이다.

진정 낙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려면 생명을 잉태하는 주체로서의 여성, 낙태를 결정하는 주체로서의 여성들이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그 때서야 낙태를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리게 된다. 그 공간에서 비로소 우리는 낙태가 여성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권리로서의 여성의 재생산과 그 권리가 보장되기 위한 조건들에 대해 말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권리라는 쟁점 자체가 들어설 수 없는 상황이다. 여성들의 권리를 말하기 이전에 우선 그 권리에 대해 발언할 수 있는 지형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프로라이프의사회는 낙태 단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2. 미국의 신보수주의, 한국의 프로라이프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출산을 장려하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자는 구호 아래 진행되는 낙태 근절 운동은 미국의 신보수주의 운동과 내용적으로 매우 흡사하다. 1973년 미 연방대법원은 '로우 대 웨이드' 사건에서 여성이 아이를 낳을지 결정하는 것은 미국인의 사생활 권리에 속한다는 논리에 근거해 낙태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림으로써 낙태를 합법화했다. 이후 1970년대 중반에 처음 나타난 친가족 운동은 페미니즘에 의해 이미 획득된 낙태권을 문제 삼으면서 이를 제한하려는 프로라이프 운동을 전개했다. 이 운동은 낙태권에 대한 공격을 시발점으로 가족, 성욕, 재생산에 대하여 페미니즘이 정치화했던 의제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친가족 운동은 레이건, 부시 시대에 대중적인 토대를 확립하였고 영국의 대처 정부도 이런 방향으로 수렴되고 있었다. 미국에서 친가족 운동으로 결집한 우파는 공화당의 정책을 반페미니즘, 반동성애, 반낙태로 전환시켰다. 클린턴은 1992년 대선에서 공화당의 친가족 정책에 반대했지만 선거 이후 클린턴 역시 가족의 가치를 옹호했다. 영국의 블레어 수상 또한 가족을 강화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공언하였다.

이러한 친가족적 흐름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약화되는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개별 가족에 전가하려는 흐름에 다름 아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 등장한 신자유주의 정책은 "사회적 안정은 행복한 가족에 달려있고 가족의 행복은 자기희생적인 여성에게 달려 있다"는 의미의 슬로건을 내걸고 페미니즘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다. 한국의 경우는 1997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실질 가족임금 삭감, 여성노동의 주변화(저임금의 불안정한 노동), 가사, 양육노동의 여성 전가로 여성의 출혈판매가 강요되었다. 이는 출산율 저하와 무관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더해 '프로라이프' 운동은 당장 아이까지 더 낳으라고 하고 있다. 미국의 친가족 정책이든 한국의 프로라이프 운동이든 신자유주의로 인한 사회적 위기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고 여성들의 권리를 억압하는 것은 동일하다.

3. 국가 인구조절 정책의 대상으로서 여성의 몸

이제까지 국가가 낙태를 용인하다가 이제와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여성의 재생산을 인구조절 정책의 대상이자 도구라는 관점을 견지한 채 인구조절정책을 출산억제에서 출산장려로 기조를 전환한 것이다. 여성이 출산을 할지 말지 결정할 권리는 국가정책에 종속되었으며 여성의 몸은 국가의 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인구가 많으면 피임을 위한 난관수술이나 자궁 내 장치로, 인구가 적으면 '강제적 임신과 출산'으로 국가의 개입과 규제의 대상이 되어왔다.

낙태의 법적 지위는(명문상 의미 뿐 아니라 실질적 의미를 포함해서) 국가의 출산정책과 조우해왔다. 한국에서는 일본의 지배하에 일본 형법이 들어오면서 1912년 낙태에 대한 처벌 규정이 처음 생기게 되었는데 당시 일본형법은 기독교 윤리관에 기초한 19세기 근대국가의 형법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1947년 해방 직후 산아제한 분위기와 전쟁 후 인구증가가 공익이라는 생각이 공존하면서 낙태죄를 유지할 것인가를 둘러싼 논란이 있다가 1953년 해방 이후 최초 형법에 낙태죄가 유지되었다[1].

1961년에는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가족계획이 처음 채택되었다. 국가는 가족계획사업 10개년 계획 하에 인구증가율을 감소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가족계획에 대한 지도와 교육사업 및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국민들이 이를 적극 수용함으로써 인구증가 억제에 많은 효과를 거두었다. 이런 시대적 분위기에서 1962년 이래 낙태 시술은 원하지 않는 임신을 중단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정부는 인구증가 억제를 위해 '월경조절술'이라는 이름으로 낙태 시술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이로써 한국에서 낙태 시술이 크게 성행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가족계획사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낙태의 일부합법화를 시도하는데 1973년 모자보건법은 동법 제8조에서 낙태시술 허용사유를 확대하면서 법적 완화가 이루어진다. 이후 정부는 1976년, 1982년, 1985년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 사유를 확장하려고 하지만 종교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이를 추진하지 못했다.

이 와중에 출산율은 1960년 6.0명이던 것이 1970년에는 4.53, 1983년에는

1) 전효숙, 서홍관, '해방이후 우리나라 낙태의 실태와 과제', <의사학> 제 12권 제2호, 2003년 12월

인구대치수준인 2.1명으로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80년대 후반 피임도구의 무료공급을 중지하였고 1996년 출산억제정책을 인구자질 향상정책으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1999년 출산율은 1.5명, 2001년에는 1.30명, 2002년 1.17명으로 더욱 낮아졌다. 정부는 2003년 보건복지부 주도하에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안을 서둘러 마련하였고, 2005년, 2006년에 걸쳐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는 정책들이 생산되었다. 이명박 정부가 2008년에 세운 대통령직속기관인 미래기획위원회는 작년 11월 저출산 종합대책으로 불법 낙태 단속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런 정책 변화를 보면 낙태의 문제가 태아의 생명존중을 위해 일관되게 제기되었다기 보다는 인구조절의 맥락에 따라 출산억제정책 시에는 묵인했다가 출산장려정책 시에는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출산정책은 변해왔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출산정책 속에 여성의 재생산권리는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국가의 인구조절정책은 여성의 재생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력 재생산을 관리하기 위해 여성의 재생산을 통제하는 것으로 일관해왔다. 한국 자본주의를 지탱하기 위한 노동력의 양적, 질적 관리를 위해 여성의 몸은 수도꼭지 조절하듯 피임 아니면 임신을 강요받았다. 사상 초유의 출산율 저하는 노동자들이 더 낮은 임금, 더 긴 노동시간, 더 힘든 노동강도를 향해 밑바닥으로 출혈경쟁을 해야 하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무관하지 않다. 이것을 무시한 채 국가와 사회는 여성의 몸을 착취하면서 더 강력하게 노동력 재생산 관리를 시도하려 하고 있다.

4. 낙태의 음성화가 여성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세계보건기구는 낙태합법화 여부보다는 성교육의 부재, 피임법에 대한 무지, 부성애 결핍, 통합적 건강보호체계의 미비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낙태시술 빈도를 높이는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우리나라 여성의 연간 낙태율은 이는 1000명당 평균 29.8명으로 미국(21.1명)이나 영국(17.8명)보다 높지만 미국이나 영국은 한국보다 더 포괄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또 카톨릭 전통이 강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낙태를 다른 대륙보다 엄격하게

처벌하고 현재까지도 사회적 금기로 여기지만 유럽이나 미국 등 낙태를 허용하는 국가들보다 낙태시술 빈도가 오히려 더 높다. 더군다나 낙태가 불법화된 국가들의 경우 다른 나라로 가서 낙태 시술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낙태 빈도가 낮다고 해서 믿을 만한 것도 아니다.

낙태 접근권을 제한하는 것은 낙태를 줄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미 낙태시술을 원하는 여성이 시술병원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출산을 택하지 않는 여성들은 낙태시술을 하기 위해 더욱 음성화된 경로를 찾아 위험한 시술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루마니아에서는 낙태가 불법화되기 시작한 1965년부터 1984년까지 100,000건의 출산 당 모성사망률이 21건에서 128건으로 증가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낙태가 합법화되면서 1970~1976년 사이 5000건의 낙태 당 사망률이 30에서 5로 줄었다.

낙태의 법적 지위는 여성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명문상 낙태가 불법이지만 고발이나 처벌이 드물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합법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었다. 167개국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낙태의 법적 허용범위가 1) '여성의 생명이 위급할 때만', 2) '1의 경우 + 여성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해로울 때', 3) '2의 경우 + 강간이나 근친상간일 경우'까지인 경우 안전하지 않은 낙태는 여성 1000명 당 23~25건이었고 낙태 허용범위가 4) '3의 경우 + 태아 기형인 경우'인 경우 10으로 감소했고, 5) '4의 경우 +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6) '5의 경우 + 산모의 요청에 따라'인 경우에는 0~2건으로 급감했다. 또 165개국을 대상으로 했을 때 낙태 시술로 인한 산모 사망은 낙태 허용 범위가 1,2,3,4인 경우 각각 10만 건의 출산 당 각각 34, 55, 30, 10을 나타냈고 낙태허용범위가 5) 사회경제적 요인, 6) 여성의 요청에 따라 확대되었을 경우 낙태시술로 인한 모성사망은 각각 0, 1로 감소했다.

낙태 시술 자체는 훈련된 전문인에 의해 시행되었을 때는 비교적 안전한 시술이지만 훈련된 전문가에 의한 시술일지라도 합병증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음성적으로 비전문인이 임의로 시행할 경우 합병증은 매우 심각할 수 있다. 낙태는 다량의 출혈이나 쇼크, 자궁 내 감염, 불임 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 질 열상, 자궁 천공 등의 생식기 손상 뿐 아니라 방광이나 장에 손상을 줄 수도

있다. 낙태시술을 하는 의료기관, 의료인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면 여성들의 낙태접근권은 심각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여성들은 원하지 않는 임신을 억지로, 고통스럽게 지속하거나 원하지 않는 임신을 중단하기 위해 목숨이라도 걸어야 할지 모른다. 그리고 목숨을 거는 경우는 주로 안전한 시술을 위해 고비용을 부담하거나 외국으로 원정 낙태를 갈 수 없는 빈곤 여성들이 될 것이다. 일례로 멕시코 페미니스트들은 공공연히 "부유층 여성들은 낙태하고 빈곤층 여성들은 죽는다"는 말을 했는데 이 말은 부유층 여성들은 비밀스런 낙태나 외국에서의 낙태에 고비용을 들여 사회적 금기를 비껴갈 수 있는 반면 빈곤층 여서들은 위험한 자가 인공낙태를 시도함으로써 출혈이 발생해 사망에 이르는 것을 비유한 것이었다.

5. 권리로서의 여성의 재생산

프로라이프의사회의 낙태근절운동에서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는 들어설 여지가 없다. 이들은 낙태 근절을 위해 미혼모와 사생아, 기형아와 장애아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 제거, 공공 및 사설 보육시설의 확충, 직장 내 임산부와 워킹맘에 대한 처우 개선, 청소년 임신의 경우 남성의 책임 문제, 대국민 성교육과 피임교육 및 낙태 폐해 교육, 생명경시 풍조와 개인주의 제고 등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 모든 해결책은 '여성이 임신을 하면 무조건 출산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여성이 임신과 출산 관련해서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설계할 여지는 어디에도 없고 여성은 임신되면 출산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존재로 설정되어 있다.

모성을 전제로 하지 않은 성을 누릴 권리 혹은 모성을 거부할 권리

피임을 아무리 철저히 하더라도 피임실패의 확률은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에 임신을 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낙태에 대한 접근권은 반드시 열려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임신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성은(주로 이성관계) 여성에게 위험하고 두려운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즉 모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

성관계가 부정되는 조건에 놓이게 된다. 이것이 정확하게 낙태반대론의 결론이다(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정 무서우면 정숙하게 살면 된다'는 것이다. 즉 '아이 낳을 생각 없으면 섹스하지 마라' 내지는 '즐기는 여성은 당연히 그에 따르는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결론은 여성에게 아이를 낳고 기르는 어머니의 역할을 강요하는 성별분업 이데올로기의 맥락 하에 있다. 낙태접근권에 대한 제한은 따라서 여성의 몸에 대한 규제일 뿐 아니라 여성의 역할에 대한 규제이다. 여성은 아이를 낳고 키워야 하는 존재라는 규정이 그것이다. 그러나 여성들은 그러한 역할규정을 거부할 수 있다. 여성들은 모성을 전제로 하지 않은 성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이때 성의 위험(성폭력, 임신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또한 성관계로부터 철수할 자유도 있다. 많은 여성들이 성을 즐기기 위해 남성과는 달리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며 많은 경우 원치 않는 성관계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는 곧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재생산 권리를 위한 조건으로서 피임 접근권과 양육서비스의 사회화

프로라이프의사회 뿐 아니라 국가정책연구기관이나 학자들도 낙태를 예방하기 위한 주요 방안으로 피임교육과 피임도구의 공급 그리고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사회적 시스템 마련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방안의 목적이 '낙태를 근절하는 것'이 되어서는 여성들의 재생산 권리를 보장할 수 없다.
다양한 피임방법들에 대한 접근권은 낙태 근절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성들이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기 위한 도구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피임이 접근되지 않는다면 여성들의 피임은 도리어 남성의 욕구에 봉사하는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낙태 합법화 또한 남성이 더 손쉽게 여성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이탈리아의 일부 여성운동의 입장이기도 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여성들이 스스로 자신의 몸을 통제하기 위해 피임과 임신에 대한 지식과 자원을 제공하는데 봉사해야지 프로라이프의사회처럼 여성들의 재생산권 자체를 통제해선 안 된다. 의사가 종교적 이유 등으로 낙태시술을 거부할 권리를 인정할 수 있지만 여성의 통제권이라는 전제하에서 피임이

든 출산이든 여성의 고유한 권리는 사회적으로 안전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또 여성들은 또한 어떤 방식으로 피임을 할 것인지 결정할 권리가 있다. 콘돔의 피임 성공률은 현실적으로 70%밖에 되지 않지만 콘돔 사용에는 부작용이 거의 없다. 반면 피임 성공률이 95% 이상인 것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경구 피임약이나 자궁 내 장치 등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아 여성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여성들이 자신이 언제 어떻게 어머니가 될지 선택이 가능하도록 사회적 체계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낙태를 근절하기 위해' 사회적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라면 '여성들은 사회경제적 조건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출산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다. 양육서비스를 사회화하는 것은 현재 여성들이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사회경제적 조건 속에서 출산을 선택하기 어려운 것과 달리 여성이 원할 경우 출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 여성이 낙태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다.

6. 여성의 몸과 재생산에 대한 권리를 이야기하자

낙태를 둘러싼 운동들은 대개 생명권(프로라이프) 대 선택권(프로초이스)의 대립으로 나타났다. 이는 핵심적인 갈등을 나타내는 것이기는 하나 이 대립은 여성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태아의 생명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던 여성도 막상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하거나 출산을 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임신을 하게 되었을 경우 낙태를 고려하게 되며 낙태를 하는 여성이 온전히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즉 낙태를 고려하는 여성에게 생명권과 선택권에 대한 고민은 중첩되어 나타나며 결과적으로 하나를 선택하게 될지라도 그 선택 자체가 부당한 경우가 많다.

노동이 불안정해지고 사회안전망이 무너지며 양육의 책임을 개인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서 여성이 태아의 생명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는 쉽지 않다. 또 성관계는 결혼의 틀 밖에서 자유롭게 이뤄지면서 결혼의 틀을 벗어난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는 사회적 낙인이 있는 상황에서 미혼 여성이 태아의 생명에 대해 고민하기 어려운 것도 마찬가지다. 그녀들에게 낙태는 지금

현실에서 절박한 것이다.

여성의 삶과 태아의 생명이 본질적으로 대립적인 것은 아니다. 현재와 같이 출산과 양육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여성의 삶을 너무 힘들게 만드는 조건 자체가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삶을 대립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물론 조건 자체가 완화되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여성에게 임신을 유지하고 출산을 하라고 강요할 수 없으며 어느 순간에는 태아의 존재가 여성 자신에게 대립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오히려 고민해야 할 지점은 그 대립을 최소한 하는 것이며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여성 자신의 임신과 출산에 대해 충분한 숙고와 통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 여성이 재생산권리를 갖는 것이 관건이다.

여성의 출산이 선택 가능한 사회적 조건이 형성되고 여성이 자신의 재생산권리에 대해 스스로 목소리 낼 수 있을 때에 비로소 태아에 대한 철학적, 윤리적 고민을 시작할 수 있으며 자신이 진정 어머니가 되고 싶은지 그렇지 않은지 성찰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1978년 노르웨이에서 낙태의 허용범위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양육이 어려운 경우'에서 '여성이 요청할 경우'로 확대된 이후 여성들은 그 이전보다 '낙태를 선택하는데 더 많은 고민이 되고 더 선택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한다. 이는 당시 노르웨이의 태아생명옹호론자들이 낙태의 허용범위를 그렇게까지 확대하면 여성들이 너무 쉽게 낙태를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예견한 것과는 정 반대다.

지금 필요한 것은 여성들의 목소리로 여성의 몸과 재생산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다. 이는 여성 스스로 여성의 권리를 이해하고 쟁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성들의 몸에 대한 통제권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사회구조적 조건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요구해야 한다.

안전하고 저렴한 낙태 시술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라!
의무가 아닌 권리로서 피임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라!
양육 서비스의 시장화가 아닌 사회화!
여성의 재생산권 없는 저출산 정책 중단하라!

[자료]멕시코의 낙태합법화 운동

현재 라틴아메리카에서 여성의 자발적 낙태를 완전히 허용하는 국가는 쿠바, 푸에르토리코, 가이아나 등 세 국가 정도다. 그 외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성폭력, 근친상간, 태아의 심각한 기형, 산모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에 한하여서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멕시코는 1세기 전 가톨릭교회와 국가 간 정교분리가 헌법에 명시됨에 따라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진보적인 낙태법을 가지고 있다.[2)]
멕시코에서 낙태합법화 운동은 1970년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목표로 시작되었고 1980년대에는 '자발적 모성'으로 목표를 전환하였다. 1990년대 본격적인 낙태합법화 과정을 거쳐 2007년 4월 멕시코시티 시의회에서 낙태합법화 및 비범죄화가 승인되었다.

1970년대 낙태합법화 운동을 주도한 세력은 멕시코의 신페미니즘으로 68혁명의 영향을 받은 멕시코시티 출신의 높은 교육을 받은 중산층여성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멕시코의 신페미니스트들의 낙태합법화운동은 "내 몸은 나의 것이다"를 모토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운동은 소그룹의 의식화 운동으로 진행되면서 섹슈얼리티 논의에 멕시코의 모든 여성을 포함시키기보다 극소수 레즈비언 여성들의 권리회복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신페미니즘 운동은 내부적으로 동성애자 그룹과의 갈등과 분열로 단일한 행동전략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주로 개인의 실천영역에서 운동을 진행하는 한계를 보였다.

몸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했던 1970년대 낙태합법화 운동과는 달리 1980년대 멕시코의 낙태합법화 운동은 여성의 선택, 사회정의, 공공보건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인 '자발적 모성'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멕시코 페미니스트들은 낙태권 제한이 극빈층에게 더 큰 타격을 주는 국가들의 경우 여성의 자기결정권/자율권 개념보다는 건강에 대한 정보제공, 공공서비스로의 접근 가능성 등의 쟁점을 포괄하는 자발적 모성 개념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여겼다. 실제로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경우도 낙태 범죄화, 비합법화에 대응하는 논리로 몸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나 프라이버시보호와

같은 페미니스트 구호보다는 오히려 건강권, 생명권을 포함하는 사회적 정의 개념이 더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있다. 여성의 자율성이나 재생산권리에 호소하는 것이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서 광범위한 사회연대를 가로막는 경향이 있었고 생명의 존엄성을 주장하는 낙태반대론자들과 끝없는 갈등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의 재생산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낙태합법화를 도출하기에 불리하다고 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제기하지 않는 것이 운동의 올바른 접근인가 하는 것은 고민할 여지가 있다. 여성운동이 낙태합법화를 요구했던 맥락은 여성의 재생산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낙태합법화를 요구했던 것이지 여성의 재생산권리를 제기하지 못한 채 법과 제도의 개혁만을 달성하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유주의 사상이 강한 미국의 경우 낙태합법화는 오히려 '개인의 프라이버시 존중'이라는 논리를 통해 가능했다. 가톨릭 전통이 강한 라틴아메리카와는 또 다른 배경인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낙태를 사생활 권리로서 합법화한 것은 자유주의적 '개인'의 사생활 권리를 인정한 것이지 남성과는 다른 여성의 고유한 재생산권리에 주목한 것은 아니었다.

멕시코에서 낙태합법화 논의가 대중적으로 광범위하게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99년 '빠울리나 사건'을 통해서였다. 빠울리나는 13세의 소녀로 성폭행을 당한 후 임신이 되었는데 당시 제한적 상황에서만 허용되는 멕시코 낙태법으로 인해 가족들이 함께 낙태를 결정했음에도 낙태를 할 수 없었고 빠울리나는 아이를 출산해야 했다. 이어 2000년에는 보수정당인 국민행동당(PAN)이 성폭력으로 임신한 경우 합법적 낙태를 허용하는 법조항을 폐지하려고 하자 여성단체와 페미니스트들은 합법적 낙태권을 방어하기 위해 대응하였다. 이를 계기로 낙태에 대한 보수 세력의 공세와 비판이 정당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2003년 제도혁명당이 제출했던 낙태법 개정안은 임신 초기 12주까지 낙태합법화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낙태를 시술한 의사가 처벌되는 모순되는 부분을 담고 있었다. 이에 여성단체, 시민단체, 학술단체 등은 낙태법 재개정을 요구하였다. 이어 2007년에는 멕시코시티 시의회가 임신 초기 12주 이내에 한해 낙태합법화, 비범죄화를 통과시켰다. 시의회 의원들이 낙태법 개정안 논

쟁을 진행하는 동안 의사당 밖에서는 낙태 옹호론자들과 낙태 반대론자들이 대립적인 시위를 벌였다. 2007년 낙태합법화 법안에 가장 극렬히 반대한 단체는 극단적 보수성향의 ProVida로 이들은 '생명을 위한 행진'을 주도하며 낙태합법화에 찬성하는 시의원들에게 전화로 살해협박을 하기도 했다.

로마교황청은 태아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멕시코시티의 낙태법에 대해 우려하는 서한을 멕시코 주교회의에 전달했다. 멕시코 주교단은 멕시코 헌법 4조를 근거로 "어떠한 생명도 박탈될 수 없기" 때문에 낙태는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멕시코 여성연구소는 헌법 4조에 대해 "여성과 남성 모두가 자녀수와 터울 조절을 위해 자유롭고 책임있게 개인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근거로 낙태권을 지지했다.

낙태옹호론자들은 멕시코에서 낙태 시술을 받는 여성 대부분이 어머니, 기혼자, 가톨릭 신자라는 점을 강조한다. 멕시코에서 낙태는 가톨릭 교도든 아니든, 생명을 위한 행진을 하든 안하든, 낙태법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발생되는 실제적 문제라는 것이다.

인상적인 것은 가톨릭 단체들 중에서도 낙태옹호론자들이 등장했다는 것이다. '결정권을 지지하는 여성가톨릭교도들'이라는 가톨릭 여성조직은 멕시코,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등 라틴아메리타 6개국과 2개의 유럽국(스페인, 프랑스), 캐나다, 미국 등에서 활동하는 국제기구이다. 이 조직은 바티칸과 가톨릭교회 질서 하에서 여성의 섹슈얼리티, 재생산권리, 낙태권과 종교적 신념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였다. 성적권리와 재생산권리에 대한 이 조직의 입장은 페미니스트운동이 가톨릭교회와 양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했다. 또 '결정권을 지지하는 전국 가톨릭청년교도들의 네트워크'는 낙태법 개정과 관련해 가톨릭교회, 로마교황청, 멕시코시티 정부, 의회 시민단체 사이에 유발된 논쟁에 대해 가톨릭교회가 멕시코 사회에 증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낙태 옹호론자와 낙태 반대론자들의 극한 대립상황에서 민주혁명당 소속 시의원들은 2007년 낙태법 개정이 낙태를 촉진하기보다는 변화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에 적합한 입법화를 시도한 것이라고 밝혔다. 멕시코시티 시장 에브라르드는 시정부가 낙태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 낙태시술이 여성의 생명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낙태를 합법화했다고 주장한다.

2008년 8월 멕시코 대법원은 결국 낙태법에 대해 합헌적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임신 초기 태아에 대한 생명권 불인정이라는 멕시코 헌법과 국체협약의 규정이 낙태법 비범죄화 판결의 주된 근거였다고 밝혔다. 멕시코시티의 낙태법이 합헌적이라는 판결에 따라 멕시코시티에서는 임신 12주 이내의 낙태에 대해 합법화가 인정되었고 멕시코시티에서 낙태는 위생적 환경에서 무료로 시술될 수 있게 되었다.

2) 강경희, '멕시코의 페미니스트운동과 낙태정책: 2007년 멕시코시티 낙태합법화의 의미', <라틴아메리카연구>, Vol. 22 No.2, 2009.

[소개]

모두가 자유로워질 때까지 여성들은 행진한다!

2010 세계여성행진 3차 국제행동

1. 세계여성행진 2010년 호소문

모두가 자유로워질 때까지 여성들은 행진한다!

5개 대륙에서 모인 우리 세계여성행진의 활동가들은 2010년 다시 한 번 길 위에 서고자 합니다. 세계여성행진은 조직된 여성으로서 우리의 강인함과 인내를 드러내 보일 것입니다. 서로 다른 경험, 상이한 정치 문화, 다양한 민족

적 배경을 가진 여성들이 함께 모여 세계여성행진을 조직했습니다. 그러나 그 정체성과 목표는 하나입니다. 폭력과 가난을 야기하는, 불의가 만연한 지금 세상을 뒤엎어, 평화, 정의, 평등, 자유, 연대에 토대를 둔 세계를, 원하는 대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전쟁과 분쟁 때문에, 여성들을 자신의 집에 죄수로서 가두어 놓는 성별분업 때문에, 거리, 일터, 교육기관, 여가활동공간 등 공적 공간을 남성의 전유물로 한정하는 자본주의와 가부장제 때문에, 일차적인 보살핌 제공자로서의 책임으로 인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리에 함께 할 수 없는 여성들과 연대하여 행진할 것입니다.

우리는 행진을 통해 권리를 요구할 것입니다. 종교 근본주의의 공세, 보수적 사회와 국가에 맞서 쟁취해낸 권리를 앗아가려는 이들에게 저항할 것입니다. 자율, 자기결정, 연대가 사회 조직의 근간이 되는, 우리가 원하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 행진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섹슈얼리티, 육체를 상품화하려는 시도에 맞서 행진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고파는 대상이 아닙니다. 포르노 속에서, 인신매매의 현장에서, 광고 산업에서, 여성을 고기조각 취급하는 현실을 거부합니다. 가정폭력과 직장폭력도 감내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여성이 폭력과 위협이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행진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성의 생산 및 재생산 노동을 일상적으로 착취하며, 그 부를 한 줌도 안 되는 이들의 손에 집중시키는 성차별적, 인종차별적, 동성애혐오주의적 자본주의 체제를 고발하기 위해 행진할 것입니다. 우리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정 최소임금, 보살핌 노동의 재구조화와 분담, 사회 보장을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차별적 요소도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여성들이 경제적 자율성을 쟁취할 때까지 행진할 것입니다.

우리는 분쟁을 즉각 종식시키고, 여성의 육체를 전리품으로 삼는 행위를 중단

시키기 위해 행진할 것입니다. 분쟁의 이면에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 즉 천연자원 및 인민의 통제, 군수산업의 이권 등을 폭로하기 위해 행진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성들이 평화 재건 사업의 주역으로 인정받고, 적극적 평화가 정비된 고국에서 안정된 삶을 누릴 때까지 행진할 것입니다.

우리는 천연자원과 공공서비스의 사유화에 맞서 행진할 것입니다. 우리는 식량 및 에너지 주권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 대지를 파괴하고 통제하려는 시도에 맞서, 거짓 기후변화 대책을 반대하기 위해 행진할 것입니다. 건강, 교육, 식수, 위생, 토지, 주거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고, 물려받은 종자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행진할 것입니다.

이 행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2. 지역에 따른 세계여성행진의 투쟁

아시아 : 자유무역과 군사기지, 여성인신매매에 반대하는 투쟁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의 세계여성행진 국가별 조직위원회가 2010년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필리핀 쿠에존시티에서 만날 것입니다. 이는 각 지역의 국가들에서 진행된 행진의 대중동원을 돌아보며 평가하고, 보다 심층적으로 세계여성행진의 행동의제에 대하여 논쟁하고, 3회 국제행동에 따라 각 지역 세계여성행진을 확장하고 강화할 행동계획을 세우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모임에 더하여 우리의 요구를 더 잘 알리기 위해 거리행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역행동의 일환으로 여성인신매매, 군사화, 기후변화에 맞선 투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남·북·중앙아메리카 :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원하는 여성들의 만남

콜롬비아의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바라는 여성들의 행동'과 세계여성행진

이 조직하고 있는 회의는 8월 16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될 것입니다. 이 모임은 아메리카 대륙의 민중들, 특히 콜롬비아에서 경험하고 있는 사회적·군사적 갈등이 빚는 심각한 상황에 대해 돌아보고, 행동을 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모임은 "전쟁이 폭력과 빈곤,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국가가 기초적인 공공서비스보다 군사비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여성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할 뿐만 아니라, (착취로 인한) 이동, 여성살해, 실종 등으로 여성들이 고통 받고 있다."라는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발표된 콜롬비아의 미군기지 건설은 남미 대륙 전체에 대한 위협입니다. 이 기지는 민중들의 주권을 위협함과 동시에 그들을 정치적·사회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군사개입의 도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의는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일단 다양한 나라의 국제적·인도주의적 행동으로 시작하고 나서 보고타 여성들의 회의가 열리고, 생명과 주권을 위한 참여와 농성으로 진행될 정치적 행동으로 막을 내릴 것입니다.

유럽 : 행진, 그리고 지역적 수준의 요구에 대한 토론

유럽의 세계여성행진 행동은 6월 30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유럽사회포럼(7월 1-4일) 전날 (비록 세계여성행진행사는 유럽사회포럼과 독립적인 행사이지만), 200-300명의 세계여성행진 활동가들의 참여로 개최될 것입니다. 이 날의 계획으로는 행진조직화, 터키와 쿠르드 여성들의 투쟁을 발표하는 4개 지역 전체 토론과 워크숍이 열릴 것입니다. 최근 작업팀은 이스탄불 행사에 앞서서 국가별 조직위원회가 논의할 유럽 지역 수준의 세계여성행진 요구를 준비 중입니다.

아프리카 : 2010년 국제 행동이 막을 내린다

폐막행사는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콩고민주공화국 남키부 지방의 바카부에서 열릴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주로 아프리카 대륙 출신의 여성들로 구성된 국제 대표단이 참석합니다. 그 외에도 대표단에는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세계 각지의 여성들이 참여합니다. 2009년 10월에 첫 번째로 진행된 국제적

인 계획수립 미션에 행동이 명시되었는데, 이틀 동안은 세계여성행진의 4지역 행동에 대한 패널토론을 하고, 하루 동안은 식량주권 축제를 벌이며, 또 하루 동안은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원하는 거리 저항을 벌이는 것이었습니다. 계획에는 나무심기, 콩고민주공화국에서 폭력의 희생자가 된 여성, 특히 음웬다의 영토(카시카)에서 생매장된 여성들을 기리기 위한 기념비를 건립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3. 국가별 행동

모두가 자유로워질 때까지 여성들은 행진한다! 2010년 세계여성행진을 위한 국가별 준비상황

2010년 국제 행동이 펼쳐지는 기간 동안, 우리는 다양한 경험, 정치적 문화와 인종적인 배경을 갖고 있지만 공동의 정체성과 목표를 갖고 집단적으로 조직된 여성으로서의 힘을 또 다시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폭력과 빈곤을 양산하는 현재의 부정한 세계질서를 전복하고, 평화, 정의, 평등, 자유, 그리고 연대에 기초하여 우리가 원하는 세계를 건설하고자 열망합니다.

우리는 2010년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 선언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3회 국제 행동에 돌입할 것입니다. 몇몇 국가들은 3월 8일-18일 기간 동안의 대중동원을 준비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언론과 시민사회, 권위자들이 여성의 요구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으로는 브라질과 케냐, 그리고 우리 자매들이 3월 9일-15일 바마코의 5개 지구 공동체와 8개 지역의 수도에서부터 시작하여 18일 분쟁이 일어난 북쪽 한 지역까지 행진을 준비하고 있는 말리공화국, 하이드라바드에서 카라치까지 농촌과 도시의 여성들이 꾸며진 차와 트랙터를 타고 대중교육과 문화적 행동을 조직하며 한 마을씩 지날 파키스탄, 그리고 스리랑카가 있습니다.

전국적이고 지역적인 집회 또는 행동들이 3월 8일이나 그 즈음에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국제 행동을 다음과 같은 전 세계 국가에서 시작되도록 할 것입니다: 알제리,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바스크 지역, 벨기에, 볼리비아,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캐나다, 칠레, 영국, 엘살바도르, 프랑스, 갈리시아, 그리스, 과테말라, 인도, 이탈리아, 일본, 마케도니아, 멕시코, 모잠비크, 네팔, 뉴칼레도니아, 페루, 필리핀, 포르투갈, 대한민국, 퀘벡(퀘벡의 자매들은 10월 12일부터 17일까지 행진할 것이다), 남아프리카, 수단, 스위스, 터키, 서부 사하라.

이러한 집회와 활동들은 행진, 집회, 상징의식, 회의, 논쟁, 캠페인, 유인물 배포, 문화적인 발표 (음악, 무용, 영화 등), 언론회의와 보도, 워크숍, 포럼, 직접적인 행동, 농성, 시각적인 상징물(깃발, 팔찌, 포스터, 인형, 화려한 색상의 스카프 등), 권위자들과의 만남, 연극, 바투카다(드럼연주 그룹), 국경에서의 만남, 그리고 요구되는 발표 등 다양하고 창조적인 형식을 취할 것입니다.

세계여성행진(WMW) 3차 국제행동은 2번의 큰 시기별 행사를 중심으로 조직됩니다.

3월 8~18일, 전국동시다발 행진이 벌어지며, 서로 다른 유형, 형태, 색깔, 리듬을 통해, 1910년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 2회 국제 사회주의 여성회의(Second International Conference of Socialist Women)에서 제창되어 시작된 세계여성의 날 100주년을 기념합니다. 10월 7~17일 콩고민주공화국의 남키부 지역에서 국제적 행사가 벌어지며, 이와 동시다발적으로 행진과 행동을 통해 분쟁종식에 있어 여성의 주도권을 강화합니다. 이 두 개의 주요 행사 사이에 국가 및 대륙 차원의 여러 지역에서 행진 및 행동이 벌어집니다.

미주대륙: 콜롬비아, 8월 21~23일
아시아-오세아니아: 필리핀, 5월 12~14일
유럽: 터키, 6월 30일

세계여성행진은?

여성행진 웹 사이트(http://www. worldmarchofwomen.org/)

빈곤과 여성에 대한 폭력의 문제에 대항하는 세계 161개국 6000개 이상의 여성조직이 참여하는 국제 여성운동 네트워크입니다.
세계 여성행진은 남녀평등은 물론 여성 자신과 사람들의 평등을 위해 여성들 사이에서 존중과 인식의 다양성, 여성행진 전략의 다양성, 여성 지도력에 대한 존중, 여성과 다른 진보적 사회운동 간의 연대활동 강화 등을 지향합니다. 이런 점에서 여성행진은 기존의 여성운동부문과 큰 차별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째, 정부와 정부 간 국제조직을 대상으로 내외부적인 전술을 동원하여 여성의 지위와 삶의 질을 신장하는 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한 국제적인 연대활동을 전개합니다. 특히 2000년, 2005년, 2010년(예정) 3월8일(세계 여성의 날)부터 10월17일(빈곤 퇴치의 날)까지 초국적으로 전개되는 전 세계 릴레이 행진은 지방·국가·지역·국제 수준에서의 여성운동의 공통된 요구와 대안을 창출하는 학습 및 연대의 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둘째, 세계 여성행진은 여성들에게 직·간접으로 피해를 야기하는 국제금융·경제·군사기구들을 비판하고 새로운 대안을 준비하기 위하여 세계 사회 포럼 같은 초국적 공공 영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나아가 유럽·미주사회포럼에도 참여하여 초국적 사회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젠더'라는 이슈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소위 '사회포럼의 젠더화'를 강조하였다.

셋째, 여성행진은 신자유주의를 주창하는 국제금융기구들이 기업 자유화, 정부의 규제완화, 노동력의 유연화 정책 등을 강제하기 때문에 특히 이주여성이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더 큰 피해를 보게 되어 일국은 물론 전 지구적 차원의 사회적 양극화가 가속된다고 주장합니다.

세계여성행진이 걸어온 길

빈곤과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 161개국 6000개 이상의 여성조직이 참여하는 초국적 여성운동 네트워크.

1995년 캐나다 퀘벡, '퀘벡여성연합' 주최로 850명의 여성들이 10일간 경제정의와 관련한 9가지 요구사항을 달성하기 위한 '빵과 장미를 위한 행진'을 전개

1995년 베이징(北京) 여성대회에서 지구적 연대기구 형성의 필요성을 역설, '세계여성행진'이라는 초국적 여성운동 네트워크가 제안됨

1997~1998년 10월, 퀘벡 여성단체들로 구성된 '여성행진조정위원회'구성, 65개국 140여 명의 여성 대표 네트워크 구축

2000년 캐나다 몬트리올, 공식출범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10월 17일 '세계빈곤퇴치의 날' 1차 전 세계 릴레이 행진
161개국 6000개 이상의 여성단체가 행진에 참여

2001년 캐나다 퀘벡, 3차 국제회의 총회에서 초국적 네트워크 단체 조직을 목표로 채택

2003년 인도 뭄바이에서 열린 4차 국제회의에서 국제위원회 위원선출 및 조직의 가치선언 채택.
국제연대, 정보통신, 평화와 탈군사화 특별위원회 구성
페미니즘 대안경제,여성폭력, 레즈비언의 권리 등 주제별 특별대책본부 구성
반신자유주의 세계화 및 반전 포럼 참가

2004년 르완다 키갈리(Kigali)에서 열린 5차 국제회의에서 '인류를 위한 글로벌 여성헌장(Women's Global Charter for Humanity)'을 채택.

2005년 3·8 세계여성의날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시작하여 10.17 세계빈곤퇴치의날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까지 2차 세계 릴레이 행진, 4만여 명이 여성헌장과 퀼트를 제작하며 행진함.

2005년 7월3일, 세계여성행진 한국 도착. 신자유주의와 전쟁에 반대하는 여성공동행동 진행

2006년 페루 리마에서 열린 6차 국제회의에서 2007~2010 전략계획을 확정.

2010년 3월 8일 세계여성행진 3차 국제행동 시작, 국가 및 대륙 차원의 공동행동 계획 중
10월 7~17일 콩고민주공화국의 남키부 지역에서 세계동시다발 행동 계획 중.

사회진보연대 |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259-12번지 3층 121-865
· 전화 : 02) 778-4001~2
· 팩스 : 02) 778-4006
· 이메일 : pssp@jinbo.net
· 홈페이지 : www.pssp.org